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2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정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역사문화 가치보전을 이유로 정비구역 직권해제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을 정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③ (생략)</p> <p><신설></p> <p>④ (생략)</p> <p>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⑥ (생략)</p>	<p>제39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제5항----- ----- ----- ----- ----- ----- -----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⑦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안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p>	<p>⑧ 제5항 ----- ----- ----- ----- -----.</p>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중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견폐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계획과 정성훈(02-2133-8324)